

## 경기자 요령

## 심판원 요령

### 『입·퇴장』

1. 경기자는 입·퇴장할 때 호완을 호면속에 넣고 오른손에 들고 죽도집은 왼손에 들며 선수석에 정렬하고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정면에 예를 한 후 착석 또는 퇴장한다.

### 『정렬』

1. 단체경기의 경우, 선봉2위는 호구를 착용, 죽도를 들고 입례의 위치에 정렬하고, 주심의 구령에 의해 상호 예를 한다(단체경기의 정렬 방법 제1도). 계속해서 다음의 경기가 이어질 때는 경기장내 2팀이 1열로 선다. 단, 2팀이 1열로 설 수 없을 때는 이에 구애 받지 않는다(단체경기의 정렬방법 제1도제2도).

1. 심판원이 교대할 때는 심판기의 손잡이 부분이 우측으로 향하게 한 후 백기를 안쪽 흥기를 바깥쪽으로 하여 감는다. 이동·교대 요령 제1도·제6도와 같이 한다.

### 『경기개시전에 심판원의 이동과 기를 드는 방법』

1. 심판원의 이동은 다음과 같다.  
(1) 개인경기(첫번째 경기)의 경우

경기자 요령	심판원 요령
	<p>정렬 후, 정위치로 이동한다(심판원의 이동·교대요령 제1도→제2도).</p> <p>(2) 단체경기의 경우, 정렬한 후 주심의 구령에 의해 단체상호의 예를 한 후 정위치로 이동한다. (심판원의 이동·교대요령 제1도→제2도).</p> <p>2. 심판원이 기를 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p> <p>(1) 이동할 경우 양기를 오른손에 든다.</p> <p>(2) 정위치로 이동한 후에는 주심은 오른손에 홍기, 왼손에 백기를 들고 부심은 그 반대로 한다.</p> <p>(3) 교대할 때는 백기를 안으로 홍기를 밖으로 하여 감는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심판원의 교대』</b></p> <p>1. 심판원의 교대요령은 다음과 같다. (심판원의 이동·교대요령 제3도→제6도)</p>

경기자 요령	심판원 요령
--------	--------

- (1) 심판원의 이동 교대  
각 심판원은 양기를 감지 않고 정위치로 이동한다(제3도)
- (2) 심판원의 현장교대  
각 심판원은 양기를 감아서 다음의 심판원과 상호 예를 하고 교대한다(제4도)
- (3) 심판원의 이동 후 교대  
각 심판원은 정 위치에 이동한 뒤, 주심을 끝낸 심판원은 양기를 감고 다음의 심판원과 상호 예를 하고 교대한다(제5도)
- (4) 종료한 심판원의 정렬 후 교대  
종료한 심판원은 양기를 감고 정렬하여 다음의 심판원과 교대한다(제6도)

**『정면 에 대한 예』**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기자는 다음의 경우, 입례의 위치에서 주심의 구령에 따라 정면에 대한 예를 한다.</li> <li>(1) 첫경기의 개시 시 및 결승전의 개시 시와 종료 시</li> <li>(2) 경기가 2일 이상 실시될 경우, 첫경기의 개시 시 및 최후 경기의 종료 시 또는 결승전 개시 시와 종료 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판원은 다음의 경우에 정면에 대한 예를 한다.</li> <li>(1) 첫경기의 개시 시 및 결승전의 개시 시와 종료 시</li> <li>(2) 경기가 2일 이상 실시될 경우, 첫경기의 개시 시 및 최후 경기의 종료 시 또는 결승전의 개시 시와 종료 시</li> </ul> |
|---|--|

<b>경기자 요령</b>	<b>심판원 요령</b>
---------------	---------------

- |   |   |
|---|---|
| <p>경기자는 첫 경기 개시 및 결승전의 개시 시와 종료 시 다음과 같이, 입례의 위치에서 주심의 구령에 따라 정면에 대한 예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기가 있고 회장이 앉아 있는 곳</li> <li>② 심판장이 있는 곳</li> </ul> | <p>2. 주심은 다음의 경우에 정면에 대한 예의 구령을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경기의 경우, 심판원 정위치에 선 직후</li> <li>(2) 단체경기의 경우, 심판원과 경기자가 정렬한 직후</li> </ul> |
|---|---|

**『개 시』**

- |  |  |
|--|--|
| <p>1. 경기자는 경기를 개시할 때 입례의 위치에 나가서 「든칼」 자세로써 상호 예를 하고 「허리칼」 자세로써 3보 나가 개시선에서 죽도를 뽑아 맞춘 뒤 주심의 선고로 경기를 개시한다.</p> | <p>1. 심판장은 첫경기 개시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기장이 하나인 경우는 최초의 경기자가 입례의 위치에 섰을 때 기립한다.</li> <li>(2) 경기장이 둘 이상인 경우는 각 경기장의 최초의 경기자가 입례의 위치에 섰을 때 기립하여 호각 등으로 신호한다.</li> </ul> <p>2. 주심은 첫경기 개시의 경우, 심판장이 신호한 후 경기개시 선고를 한다(제1도).</p> |
|--|--|

**『유효 격자』**

- |                           |  |
|---------------------------|--|
| <p>1. 경기자는 주심의 유효격자 선</p> | <p>1. 심판원의 기 표시는 다음과 같다 (기의 표시요령 제1도~제4도).</p> |
|---------------------------|--|

경기자 요령	심판원 요령
<p>고가 있을 경우 즉시 경기를 중지하고, 개시선에 돌아가 서로 중단세를 취하고 주심의 선고를 받는다.</p>	<p>(1) 유효격자가 결정된 경우, 심판원은 기를 표시한 채로 정위치에 돌아가서 주심의 선고로 기를 내린다(기의 표시요령 제2도, 제4도).</p> <p>(2) 유효격자의 결정이 안된 경우, 심판원은 즉시 기본자세로 돌아간다.</p> <p>(3) 유효격자를 인정하지 않는 기의 표시를 한 경우, 타심판원이 그 표시를 확인한 후 기를 흔드는 것을 멈춘다(기의 표시요령 제3도→제1도).</p> <p>(4) 주심이 유효격자를 인정하지 않은 표시 또는 기권의 표시를 하고 유효격자가 결정된 경우, 주심은 유효의 표시를 한다(기의 표시요령 제3도, 제4도→제2도).</p> <p>2. 유효격자를 취소하는 경우, 주심은 합의 개시 전의 기 표시로 돌아가서 선고하고 양기를 좌우로 흔든다(기의 표시요령 제2도→제3도).</p>

## 경기자 요령

## 심판원 요령

### 『중지의 요청』

1. 경기자가 경기의 중지를 요청할 경우, 손을 든 뒤 주심에게 즉시 그 이유를 말한다.
2. 경기자는 착용한 용구가 흐트러진 것을 고칠 때는 개시선에서 쫓아 칼하고 경계선의 안쪽까지 물러나서 정좌하여 신속히 고친다.

1. 경기자로부터 경기중지의 요청이 있을 때 주심은 즉시 경기를 중지하고 경기자가 개시선으로 가면 주심이 경기자에게 가서 중지 요청의 이유를 묻는다.  
[경기·심판규칙 제29조 5호].
2. 전항의 중지 요청이 부당하다고 심판원이 판단한 경우 합의를 한다.

### 『중 지』

1. 경기자는 심판원의 「중지」 선고가 있을 경우, 즉시 경기를 중지하고 개시선에 돌아가 주심의 선고 또는 지시를 받는다.

1. 심판원의 중지 선고는 다음의 경우에 한다.
  - ① 반칙
  - ② 부상이나 사고
  - ③ 위험방지
  - ④ 죽도 조작불능의 상태
  - ⑤ 이의 제기
  - ⑥ 합의
  - ⑦ 등줄이 위로 되어 있지 않을 때
  - ⑧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중지 선고의 경우, 심판원은 다음에 따른다

경기자 요령	심판원 요령
	<p>(1) 중지의 선고가 있을 때 심판원은 정위치에 돌아간다.</p> <p>(2) 경기자 쌍방이 중지선고 또는 기의 표시를 확인하였을 때 심판원은 기를 내린다(기의 표시요령 제6도→제1도).</p> <p>(3) 반칙이 인정되었을 때 심판원은 기를 표시한 채로 정위치에 돌아가서 주심의 선고로 기의 표시를 멈춘다(기의 표시요령 제9도→제1도).</p> <p>(4) 부심이 중지의 선고를 한 경우, 주심은 즉시 중지의 선고와 동시에 기의 표시를 한다(기의 표시요령 제6도→제1도).</p> <p>3. 경기자 중 한사람이 죽도를 떨어뜨렸거나 넘어졌을 때 상대가 즉시 격자하지 않았을 경우, 주심은 경기를 중지한다(기의 표시요령 제6도→제1도).</p> <p>4. 반칙으로 인정할 경우, 주심은 기를 어느 한편으로 모은 후 반칙자 측에「반칙 0번」이라고 손가락으로 표시하면서 선고하고 기본자세로 돌아간다(기의 표시요령 제9도→제1도).</p>

경기자 요령	심판원 요령
--------	--------

5. 쌍방의 경기자가 동시에 반칙을 범하고 백(흥)에 한판이 주어질 경우, 주심은 백·흥(흥·백)의 순으로 선고를 한다(기의 표시요령 제10도→제2도→제1도).
6. 심판원은 중지 시 경기자의 죽도, 호구, 도복, 등띠 등을 만지면 안 된다.

**『합 의』**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기자는 주심이 합의의 선고를 한 경우, 개시선에서「꽃아 칼」하고 경계선의 내측까지 후퇴하여 준거(蹲踞) 또는 정좌하여 대기한다.</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판원의 합의는 다음의 경우에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유효격자의 취소</li> <li>② 심판원의 착오</li> <li>③ 반칙의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li> <li>④ 규칙의 운용 또는 실시의 의문(疑問)</li> </ol> </li> <li>2. 심판원은 합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심은 기를 들어 합의 표시를 한 후 경기자 쌍방을 경계선의 내측 까지 후퇴시키고 경기장 중앙에 모여 합의 사항을 논의 한다.</li> <li>(2) 경기 중 심판원이 합의의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중지 선고를 하고 합의를 요청한다.</li> </ol> </li> </ol> |
|---|---|



경기자 요령	심판원 요령
--------	--------

(기의 표시요령 제6도→제8도→제1도).

**『재 개』**

1. 중지 후에 경기를 재개할 경우, 경기자는 개시선에서 서로 중단세를 취하고 주심의 선고로 경기를 재개 한다.

1. 부심은 「두판쟁이」 또는 「승부」의 경우 주심의 선고와 동시에 표시한 기를 내린다(기의 표시요령 제2도→제1도).  
 2. 경기 중지 후에 재개할 경우 주심은 경기 개시의 요령으로 한다(기의 표시방법 제1도).

**『헤 어 져』**

1. 주심의 「헤어져」 선고가 있을 경우, 경기자는 즉시 떨어져서 서로 중단세를 취한 후 주심의 선고로 경기를 계속한다.

- ① 경기자가 코등이 싸움에 교착된 경우, 주심은 헤어져 선고와 동시에 양기를 앞으로 나란히 내어 경기자의 죽도가 교차되지 않도록 거리를 떨어지게 한 후 그 자리에서 계속의 선고와 동시에 양기를 내린다.
- ② 주심의 헤어져 선고 시에 선수들이 헤어지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중지시켜 개시선에서 다시 경기를 시킨다
- ③ 장외선상에서 격렬한 코등이 싸움으로 헤어져가 불가능 할 경우 즉시 중지시켜 개시선에서 경기를 진행한다.

## 경기자 요령

## 심판원 요령

### 『이의제기(異議提起)』

1. 감독이 이의제기를 한 경우, 경기자는 「합의」 때와 같은 요령으로 대기한다.

1. 심판원은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심판원은 즉시 경기를 중지시킨다(기의 표시요령 제6도→제1도).
- (2) 주임심판 또는 심판장은 심판원에 의문(疑問)의 내용을 합의시킨다.
- (3) 주임심판 또는 심판장은 그 결과를 감독에 전한다.
- (4) 주심은 경기를 재개한다.(기의 표시 요령 제1도).

### 『판정 · 경기불능』

1. 경기자는 판정에 의해 승부를 결정할 경우, 개시선에서 서로 중단세를 하고 주심의 선고를 받는다.  
2. 경기자는 경기불능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 상기 1에 의한다.

1. 판정으로 승부를 결정할 경우, 심판원은 주심의 「판정」선고에 맞추어서 승자라고 판단한 측의 기를 표시한다. 이때 비김 또는 기권의 표시는 할 수 없다(기의 표시요령 제2도→제1도).  
2. 경기불능에 의하여 승패의 선고를 할 경우, 주심은 승자 측에 선고와 동시에 표시한 기를 내린다(기의 표시요령 제2도→제1도).

## 경기자 요령

## 심판원 요령

### 『부전승』

1. 경기자는 부전승으로 승자의 선고를 받을 경우, 경기를 하는 요령으로 개시선에 나가 주심의 선고를 받고 원위치로 돌아간다.
2. 단체경기의 부전승의 경우 모든 선수는 입례의 위치에서 주심의 선고를 받는다(단체경기의 정렬방법 제1도).

1. 개인경기의 경우, 주심은 승자 측에 선고와 동시에 기의 표시를 한다. (기의 표시요령 제2도).
2. 단체경기의 경우, 주심은 해당 팀을 정렬시킨 후 선고와 동시에 기의 표시를 한다. (기의 표시요령 제2도).

### 『종료』

1. 경기자는 경기가 끝났을 때 개시선에서 서로 중단세를 취하고 주심의 선고 후 「꽃아칼」하고 입례의 위치까지 물러난 뒤 든 칼 자세로 상호의 예를 한다.

1. 승패가 결정되었거나 경기시간이 종료한 경우, 주심은 경기를 중지 시키고 경기자를 개시선에 돌려 보낸 후 선고와 동시에 기의 표시를 한다. (기의 표시요령 제6도→제1도→제2도·제5도→제1도).  
또한 연장의 경우, 연장의 선고를 하고 경기를 재개한다(기의 표시 요령 제1도).

경기자 요령	심판원 요령
--------	--------

2. 단체경기가 종료된 경우, 양 단체는 입례의 위치에 정렬하고 주심의 구령으로 단체간의 예를 하고 퇴장 한다. 이 경우, 최후의 경기자는 호구를 착용한 채로 죽도를 들고 정렬한다. (단체 경기의 정렬방법 제1도·제2도).

2. 단체 경기를 종료 할 때는 심판원은정렬하여 주심의 구령으로 단체간의 상호 예를 시킨다. (단체경기의 정렬 방법 제1도).

『기타의 요령』

1. 경기자가 쌍도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요령으로 한다.
- (1) 소도(小刀)와 대도(大刀)를 같이 든칼 자세를 취한다.
- (2) 대적세를 취할 때 먼저 오른손으로 왼손에 잡는 죽도를 뽑아서 왼손에 바꾸어 들고 다음에 오른손에 잡을 죽도를 뽑아 대적세를 취한다.
- (3) 「꽃아칼」할 때는 먼저 오른손에 가진 죽도를 꽃고 다음에 왼손에 가진 죽도를 꽃는다.
- (4) 경기자는 호구를 경기 중 흐트러짐이 없도록 견고하게 착용하고, 호면 착용시 호면 끈을 후두부 밑으로 착용을 권장하며 호면끈의 길이는 매듭에서 40cm 이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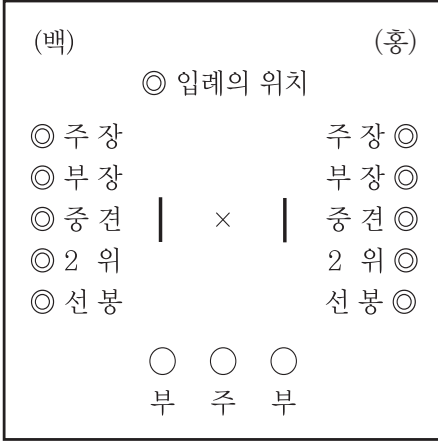
1. 심판원은 경기개시 전 경기자의 복장 (단련복상의·하의·등띠·명찰)이 적합한 지를 확인한다. [경기·심판규칙 제5조, 경기·심판 세칙 제4조·제5조].

경기자 요령	심판원 요령
<p>(5) 기타는 일반의 경우 요령에 준하여 한다.</p> <p>2. 경기자의 복장은 청결해야 하고 터지거나 찢어진 곳이 없어야 한다.</p> <p>3. 호구는 경기 중 흐트러짐이 없도록 견고하게 착용하고, 머리 끈의 길이는 매듭에서 40cm 이내로 한다.</p> <p>4. 경기자는 경기장 내에서 상호의 예만 하고 심판원에 대한 예나 상호의 개인적인 좌례(坐禮) 등은 하지 않는다.</p> <p>5. 경기자가 교대할 때 서로 잡을 두드리거나 악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p> <p>6. 경기자는 심판원이 이동하여 정 위치에 설 때까지 경기장에 들어 가서는 안된다.</p>	<p>2. 심판원은 경기자의 용구 (호구축도코등이)가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경기심판규칙 제3조제4조, 경기심판세칙 제3조제4조].</p> <p>3. 주심은 경기자가 부적절한 예법을 했을 경우 지도를 한다.</p> <p>4. 심판원은 경기자가 경기종료 후 선수석 등에서 부적절한 언동을 하거나 또는 하려고 했을 때 엄정히 지도한다.</p> <p>5. 각 계원은 원활한 임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주심심판 또는 심판장을 중심으로 사전에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한다.</p> <p>6. 표시계는 심판기를 점검확인하고 심판석에 둔다. (경기장 당 6조).</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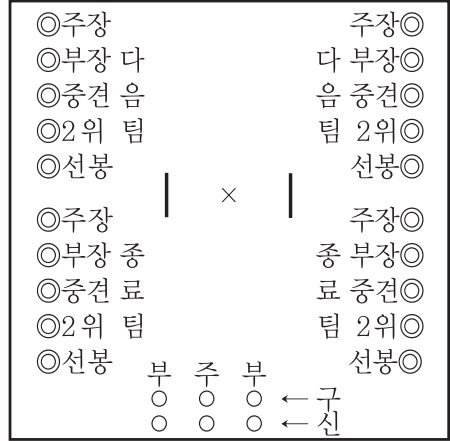
경기자 요령	심판원 요령
<p>7. 다음 경기자는 전 경기자가 경기장에서 나올 때까지 경기장에 들어 가서는 안된다.</p> <p>8. 감독선수는 선수석에 시계를 차고 들어간다든지 싸인 등으로 지시를 하거나 경기자를 성원 해서는 안된다.</p> <p>9. 선봉 또는 최후의 경기자가 대전 할 경우, 대기하는 선수는 정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 단체경기의 정렬방법

### 제1도 경기전후의 정렬방법 (1팀의 경우)



### 제2도 경기전후의 정렬방법 (2팀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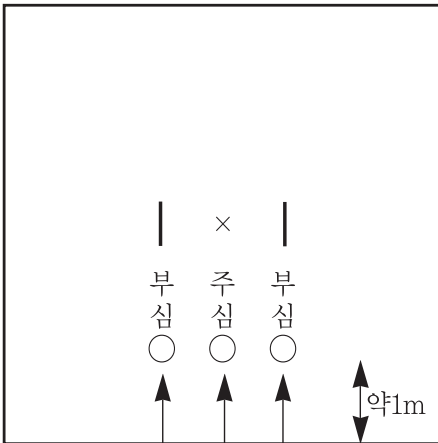


## 심판원의 이동 · 교대요령

### 제1도 심판원의 입장과 정렬

정면

심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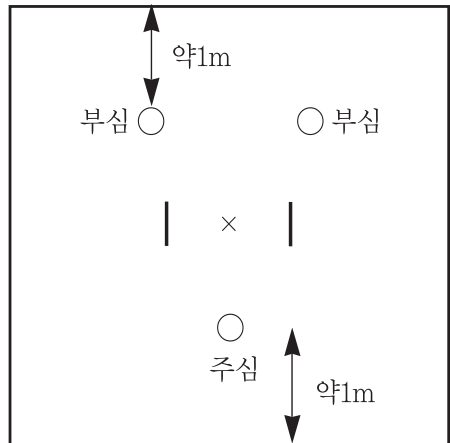


심판석

### 제2도 심판원의 정위치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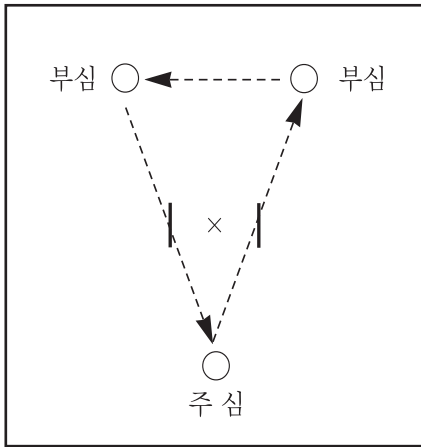
심판장



제3도 심판원의 이동교대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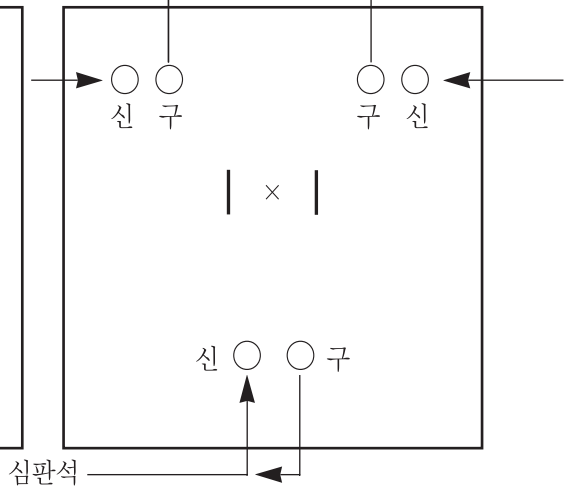
심판장



제4도 심판원의 현장교대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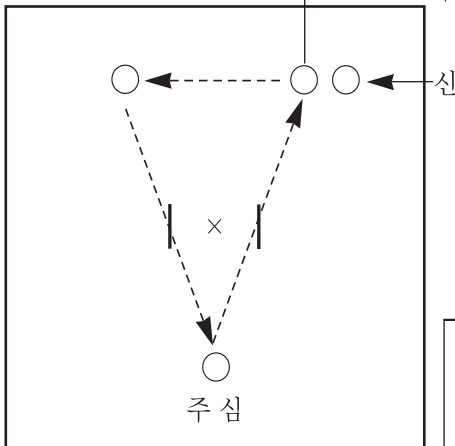
심판장



제5도 심판원의 이동 후 교대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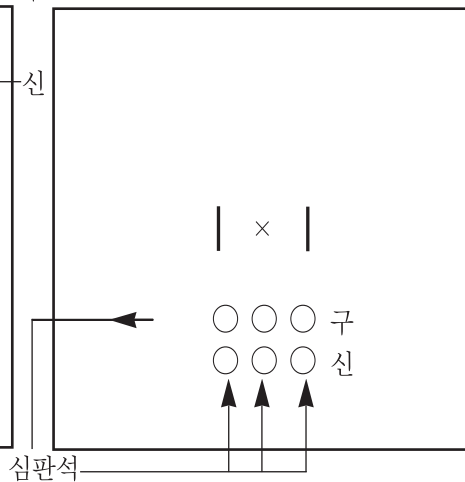
심판장



제6도 종료한 심판원의 정렬 후 교대

정면

심판장





---

## 기의 표시요령

### 제1도 개시 재개 · 종료

- 양기를 몸쪽에 붙인다 (기본자세).



### 제2도 유효격자 · 판정 · 승부의 결정

- 기를 비스듬히 위로 올린다. (45도)



### 제3도 유효격자의 불인정 및 취소, 상쇄

- 양기를 앞아래에서 좌우로 흔든다.



### 제4도 유효격자 판정의 기권

- 양기를 앞아래에서 교차하여 정지한다.



### 제5도 비김

- 양기를 앞위에서 교차하여 정지한다(홍기를 앞으로 해서).



### 제6도 중지

- 양기를 똑바로 위로 올린다.



---

제7도 헤어져

- 양기를 앞으로 낸다



제8도 합의

- 양기를 오른손으로 모아 위로 올린다



제9도 반칙

- 기를 비스듬히 아래로 내린다.



제10도 동시반칙

- 양기를 비스듬히 아래로 내린다.



## 표 시 요 령

### 1. 표시항목 또는 표시내용

주심의 선고에 따라 하기의 표시물을 정확히 표시판에 표시하고, 심판원·출전선수 또는 관중에게 경기경과를 알 수 있도록 한다.

항 목	표시물	표 시 내 용
유효격자	㉠ ㉡ ㉢ ㉣	㉠=머리, ㉡=손목, ㉢=허리, ㉣=찌름 유효격자의 표시순서는 하기 제1도의 주장전과 같이 표시한다.
반 칩	▲	반칙의 경우는 기록난의 바깥측에 “▲”(적색)를 표시한다
반칙2회	㉤	반칙2회의 경우는 반칙 “▲”를 떼어내고, “㉤”표를 상대측에 표시한다.
상 쇠		상쇄의 경우는 상쇄 전의 반칙 “▲” 표시는 남긴다. 단, 기록용지에 상쇄란을 두어서 회수를 기록한다.
판 정 승	㉥	판정승의 경우는 ㉥표를 표시한다.
추 첨 승	㉦	추첨승의 경우는 ㉦표를 표시한다.
한 판 승	한판승	한쪽이 한판을 취득하고 경기시간이 종료되었을 때는 “한판승”을 표시한다.
연 장	연 장	연장전의 경우는 “틀” 중심선 중앙에 “연장”표를 표시한다.
비 김	×	비김의 경우는 틀 중심선 중앙에 “×”표를 표시한다.
부 전 승 기 권 경기불능	“○○”	부전승, 기권, 경기불능 또는 부당행위 등으로 승부가 결정되었을 경우는 승자측에 “○○” 연장전의 경우는 “○”를 표시한다.

## 2. 표시방법

- (1) 단체경기에서의 심판원명·단체명·선수편성 또는 표시물을 표시판에 표시하는 방법은 제1도와 같다.

제1도 표시판과 표시방법

주심: <input type="text"/>		부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순 위	단체명	백		흑		단체명
선봉				한판승	⊙	
2위				⊙	⊙	
중견		○	○			
부장		⊙			⊙	
주장		▲	⊙	⊙	⊙	▲
대표전					⊙	

↑
↑
↑

둘째판
셋째판
첫째판

- (2) 개인경기에서의 표시방법은 그 대회에 정해져 있는 방법으로 표시한다.